#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인테리어 공사 공고의 건

2019.11.06

**1. 공고에 부치는 사항**

가. 공사명 및 진행일정

| 공사명 | 현장설명회 | 제안서 제출기간 | 업체선정방식 | 공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| 2019. 11. 14. (목) 14:00 | 2019. 11. 26. (화) 14:00 | 제한경쟁, 적격심사에 의한 우선협상계약 | 착공일로부터 3 주 이내 |

나. 제출처 주소 : (04088)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46, 공구빌딩 401호

다. 제출방법: 제안서는 나항의 주소인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밀봉 후 2부 인편 또는 등기우편(11/26 우편소인-익일특급인정)으로 제출

라. 공사내용: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일체

마. 공사금액: 5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, 공급자재는 없음)

**2. 선정방식**

가. 제한경쟁, 적격심사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제출된 서류의 적격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한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.

**3. 공사참가자격**

가. 공사참여확약서 제출 후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

- 공사참여확약서 제출 방법
  - ·○ 제출처 :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
  - ·○ 제출방법 : 현장설명회 장소 당일 제출
  - ·○ 제출 기한 : 2019. 11. 14. (목) 16:00
  - ·○ 담당자 :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인용 팀장(02-422-1391)

나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,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, 업태에 실내건축업 명시되어있는 법인업체 및 개인사업자

다.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이내 단일계약기준으로 1억원 이상 실적보유업체

라. 공고등록일 현재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상 참가자격의 제한대상에 해당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 및 파산 신청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마. 공고등록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

바. 공동수급(분담이행 포함)은 불가함

사. 업체경력이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인 업체

**4. 현장설명**

- 현장설명회 : 2019. 11. 14. (목) 14:00
- 장소 :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46, 공구빌딩 401호

**5. 제안서의 제출**

가. 제안서는 반드시 인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2부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제안서는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시안(설계도면), 공사견적서 및 산출내역, 공사일정표, 공사시방서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.

다. 제안서에 제출된 공사시안(설계도면)의 별도 시안 지급 비용은 없습니다.

라. 제안서에 표시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는 참여자의 귀책으로 합니다.

마.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서류

- 사업자등록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
- 보유면허증 및 기타 인허가 등록증 사본
-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1억원 이상의 실내인테리어공사 (원상복구공사 포함)를 증명 할 수 있는 용역실적증명원(건수, 금액 기재요망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(미 제출시 기본점수 부여)

**6.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**

-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적용합니다(첨부 참조).
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7. 기타 유의사항**

가. 적격대상자가 없어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될 경우 동일한 방법을 통해 추가 게시

나. 현장설명회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법령, 공사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,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, 설계서(시방서, 물량내역서) 등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,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공고에 참여한 참가자가 져야 합니다.

다. 우선대상협상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(공사 내역서 포함)에 의해 계약을 체결 (계약장소 : 추후 개별 통지)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며, 공사 지연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(손해배상금은 입찰보증금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.)

라. 일괄 하도급은 금지합니다.

마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바. 공사에 관련된 절차 및 상세 문의: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인용 팀장(02-422-1391)